#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

##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 1．제 출 자 ：충청북도교육감

2．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O 제출일자 ：2012년 12월 4일
O 회부일자：2012년 12월 6일

## 3．제안이유

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추 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 조，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 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．

## 4．주요내용

## ㅁ 춰득

（단위 ： $\mathrm{m}^{2}$ ，천원）

| 기관명 | 구분 | 사 업 명 | 수 량 | 금 액 |
| :---: | :---: | :--- | ---: | ---: |
|  | 건물 |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| 건물 |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 |
|  | 건물 |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교사신축 | 8,188 | $9,000,000$ |
| 청주교육지원청 | 건물 |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| 2,520 | $10,050,000$ |
|  | 건물 |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| $9,176,330$ |  |


| 기관명 | 구분 | 사 업 명 | 수 량 | 금 액 |
| :---: | :---: | :---: | ---: | ---: |
| 충주교육지원청 | 건물 |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| 1,232 | $2,260,315$ |
|  | 건물 | 용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| 1,200 | $2,604,680$ |
|  | 건물 |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신축 | $3,384.14$ | $4,838,384$ |
| 보은교육지원청 | 건물 |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 | $1,419.8$ | $3,176,773$ |
|  | 건물 |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| 1,302 | $2,684,850$ |
| 합 계 |  |  | (10건) | $23,903.94$ |

## [1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

- 취득위치 :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22
- 취득면적 : $2,170 \mathrm{~m}^{2} / 120$ 명 수용
- 취득금액 : 4,176,330천원

○ 사 유: 취업거점형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충북 북부지역 모집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기숙사 신축

02 가칭)충청북도교육청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

- 취득위치 :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-11
- 취득면적 : $8,188 \mathrm{~m}^{2}$
- 취득금액 : 9,000,000천원

○ 사 유: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에듀워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축

## 3 광헤원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

- 취득위치 : 진천군 광혜 원면 광혜원리 산25-2 외
- 취득면적 : $2,020 \mathrm{~m}^{3}$
- 취득금액 : $10,050,000$ 천원

○ 사 유: 2015년 광혜원중•고등학교 분리에 따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

## 교사 신축

## (4) 복대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

- 취득위치 :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08
- 취득면적 : $932 \mathrm{~m}^{2}$
- 취득금액 : $2,008,450$ 천원
- 사 유: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

5 주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

- 취득위치 :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7
- 취득면적 : $1,056 \mathrm{~m}^{2}$
- 취득금액 : $2,472,000$ 천원

○ 사 유: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

## 6 연수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

- 취득위치 : 충주시 연수동 1232
- 취득면적 : $1,232 \mathrm{~m}^{3}$
- 취득금 액 : $2,260,315$ 천원
- 급 식 소 ( 1 층) : $1,013,315$ 천원
- 다목적교실(2층) : $1,247,000$ 천원

아 아 : 2014년 학급수 증가 대비에 따른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
(7) 용두초둥학교 다목적교실 신축

○ 취득위치 :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405

- 취득면적 : $1,200 \mathrm{~m}^{2}$
- 취득금액 : $2,604,680$ 천원

○ 사 유: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

## 8 제천제일고등학교 본관교사 이전 신축

○ 취득위치 :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$15-4$ 외

- 취득면적 : $3,384.14 \mathrm{~m}^{2}$
- 취득금액 : 4,838,384천원
- 예산현황
- 2012. 본 예산 : 201,000 천원
- 2012. 제2희 추경 : 4,637,384천원

ㅇ 사 유: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

## 9 보은여자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

- 취득위치 :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 외
- 취득면적 : $1,419.8 \mathrm{~m}^{2}$
- 취득금액 : 3,176,773천원
- 급 식 소 (1층) : $1,257,095$ 천원
- 다목적교실(2층): $1,919,678$ 천원

아 사 유: 급식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

## 10 증평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

- 취득위치 :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-8
- 취득면적 : $1,302 \mathrm{~m}^{\text {B }}$
- 취득금액 : $2,684,850$ 천원
- 사 유: 각종 교육활동 및 운동부 훈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목적교실 신축


## 5. 검토의 견

○ 본 관리계획안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취업 거점형 농업계고 등학교 육성에 따른 북부지역 모집학생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고,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은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센 터 설치 및 민원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며,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 신축은 광혜원중. 고등학교 분리에 따라 신축하는 것입니다.
용두초, 복대중, 증평여중, 주성고의 다목적교실은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 등을 위한 것이며, 연수초, 보은여고의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 축은 급식환경개선과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을 신축 하는 것이고, 제천제일고의 본관교사 이전신축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신축하는 것으로

○ 사업별로 살펴보면, "청주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"은 취업 거점형 농 업계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모집학생의 통학불편 해 소를 위해 건물 $4,176,330$ 천원으로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임.

○ "충청북도 스마트에듀워크센터 및 민원인주차장 증축"은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에튜워크센터 설치 및 주차장 증축을 위해 $9,000,000$ 천원으로 증축하는 사업임.

O "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신축의 신축"은 2015년 광혜원중•고등학 교 분리에 따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교사신축을 위해 건물 $10,500,000$ 천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임

○ "용두초, 복대중, 증평여중, 주성고의 다목적교실 신축"은 교육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 등을 위한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용두초 건물 $2,604,680$ 천원, 복대중 건물 $2,008,450$ 천원, 증평여중 건물 $2,684,850$ 천원, 주 성고 건물 $2,472,000$ 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.

○ "연수초, 보은여고의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신축"은 급식환경개선 및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수초 건물 $2,260,315$ 천원, 보은여고 건물 $3,176,773$ 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.

O "제천제일고둥학교 본관교사 이전신축"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 여 노후된 본관교사를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건물 4,838,384천원으로 추진 하는 사업입.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 $\square$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 10 조（공유재산의 관리계획）（1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희에 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（이하＂관리계 획＂이라 한다）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．관리계획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．＜개정 2010．2．4＞
（2）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，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．
（3）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39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•처분에 관한 지방의희의 의결 을 받은 것으로 본다．
［전문개정 2008．12．26］

## $\square$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

제7조（공유재산의 관리계획）（1）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（이하＂관리계획＂이라 한다）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최득［매입，기부채납，무 상 양수，환지（換地），무상 귀속，교환，건물의 신축•증축 및 공각물의 설치，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．이하 이 조에서 같다］및 처분（매각，양 여，교환，무상 귀속，건물의 멸실，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．이하 이 조에서 같다）으로 한다．
1． 1 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．이 경 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볍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［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（算定）한 금액

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 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•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둥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: 20 억원 (시•군•자치구의 경우에는 10 억원)
나. 처분의 경우: 10 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2. 토지의 경우 1 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. 취득의 경우: 1 건당 6 천제곱미터 (시•군•자치구의 경우에는 1 천제곱미터) 나. 처분의 경 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•군•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 [전문개정 2009.4.24]

## $\square$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

제 13 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(1) 법 제 10 조 및 영 제 7 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 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• 처분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(2)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 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